북한인권법안 (김영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00 발의연월일: 2014. 11. 21.

발 의 자:김영우·김무성·주호영

정문헌 · 김재원 · 원유철

조해진 · 김태호 · 하태경

강창희 • 이완구 • 윤상현

황진하 • 박인숙 • 심윤조

유기준・정희수・홍문표

홍문종 · 김성찬 · 홍일표

류지영 · 김현숙 · 박창식

나성린 • 이이재 • 김용태

강석훈 · 김정록 · 이진복

이한성 · 김학용 · 김종훈

김세연 의원(34인)

제안이유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 인류역사의 발전 과정 역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음. 북한인권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안임.

그러나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 국제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북한주민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함. 이에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 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인권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함(안 제7조).
- 바.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사.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안 제9조).
- 아.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 수·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북한인권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하 "북한"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 하여야 한다.
 -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방안
 - 2.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방안
 -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 4. 북한의 인권, 인권실태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방안
 - 5.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6.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 7.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에 관한 집행계획 (이하 "집행계획"이라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 다.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어야 한다.
 -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3.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4.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의 지원 외에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 사이 대한 역할을 조정한다.
- 제8조(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 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 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를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 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다.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 라. 북한인권 관련 교육·홍보 및 출판
 - 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활동
 - 바.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2.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 연구
 -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다.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 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활동
 - 마. 통일부장관의 위탁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 바. 정부 및 민간에 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사.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그 밖의 수입금
 - ②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 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재단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장은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 장관이임명한다.
 -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 ② 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 침해사례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회보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6조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본계획
 - 2. 제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결과
 - 3.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권증진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 인권에 관한 사항을 「통일교육지원법」 제4 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제15조(남북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 (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는 이 법으로 규정에 국가의 책무 및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기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은 이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9조에 따른 재단의 임직원
 - 2.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 제20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한다.

북한인권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안 제8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 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 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다.

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안 제9조 및 제10조)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 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며, 북한 인권재단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안 제12조)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15년부터 201 9년까지 5년으로 한다.
- 나. 제정안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두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문회의 사례비 등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제정안 제7조에 따라 국군포로·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통일부에 두는 기획단에 관해서는 현재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른 기획단을 두더라도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

다.

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은 [표 1]과 같이 2014년 282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총 1,482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2015-2019년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북한인권법 제정	282	289	296	304	311	1,482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김영우 의원실 곽종호 보좌관 (02-788-2014)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북한인권 재단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2.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가.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신설

제정안 제8조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으로 하는 경우, 2014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의 연봉을 적용하여 산출한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의 2014년 인건비 기준액은 [표 2]와 같다.

[표 2]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의 인건비 기준액: 2014년

(단위: 천원)

 구 분	기준급	직무급	성과급	계
금 액	84,114	10,800	12,078	94,914

[표 2]의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의 2014년 인건비 기준액에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3%)을 적용하여 향후 인건비를 산출하고 이에 수반하여 기관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건비의 9%)및 기본경비(인건비 총액의 60%)를 합하는 경우,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의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표 3]과 같이 향후 5년간 8억 7,882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3] 북한인권대사 신설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 2015-2019년

(단위: 천원)

구	-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A) =1 -1	인건비	94,914	97,761	100,694	103,715	106,827	503,911
인건비 총액	법정부담금	8,542	8,799	9,062	9,334	9,614	45,351
	소계	103,456	106,560	109,757	113,049	116,441	549,263
7] {	본경비	62,074	63,936	65,854	67,830	69,865	329,559
	계	165,530	170,496	175,611	180,879	186,305	878,821

나. 북한인권재단 신설

제정안 제9조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10조는 북한인권재단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의 2014년 예산(241억 400만원)을 토대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3%)을 적용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산출하면 [표 4]와 같이 향후 5년간 1,318억 1,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표 4]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북한인권재단 설립	24,827	25,572	26,339	27,129	27,943	131,810

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제정안 제12조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인원은 5인(5급 1인, 6급 1인, 7급 1인, 8급 1인 9급 1인)으로 가정하고 공무원의 보수를 적용하여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추계하되, 사무실은 법무부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2014년 공무원의 보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직원의 2014년 보수 기준액은 [표 5]와 같다.

[표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직원 월보수 기준액: 2014년

(단위: 천원)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금액	49,162	45,830	38,391	37,093	28,409	198,885

[표 5]의 2014년 보수 기준액에 연도별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3%)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인건비의 9%)을 산출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건비 총

액의 60%), 사업비(인건비 총액의 40%)를 산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표 6]과 같이 향후 5년간 35억 5,640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 2015-2019년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الدادة	인건비	204,852	210,997	217,327	223,847	230,562	1,087,585
인건비 총액	법정부담금	18,437	18,990	19,559	20,146	20,751	97,883
0 7	소계	223,288	229,987	236,886	243,993	251,313	1,185,467
기	본경비	133,973	137,992	142,132	146,396	150,788	711,281
사	·업비	89,315	91,995	94,755	97,597	100,525	474,187
	계	669,865	689,961	710,659	731,979	753,939	3,556,403

3.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제정안에 따라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신설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7]과 같이 2015년 256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1,36 1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추정치: 2015-2019년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a)	1.7	1.7	1.8	1.8	1.9	8.9
북한인권 재단(b)	248	256	263	271	279	1,317
북한인권 기록보존소(c)	6.7	6.9	7.1	7.3	7.5	35.5
추가재정 소요액(a+b+c)	256.4	264.6	271.9	280.1	288.4	1,361.4